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80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김예지・박정하・백종헌

김선교・서미화・최수진

박덕흠 • 주호영 • 김은혜

김도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,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·장애인학대관련범죄·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5제4호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5제4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
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
- 마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	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
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ரி)
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	
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	
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	
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	
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	
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	
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	
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	
사람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
	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
	<u> 련범죄</u>
<u><신 설></u>	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
	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
	<u>관련범죄</u>
<u> <신 설></u>	마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
	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

	<u>련범죄</u>
5.・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